

개정 전	개정 후
<p>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</p> <p>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(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초과한 경우에는 <u>법 제4조제7항</u>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⑨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법 제4조제7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■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